**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**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개최 일시 : 2020년 03월 24일 오전 09:00
2. 개최 장소 :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 185-44(금곡동) B동 1층 회의실
3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: 2019년 12월 31일
4. 회의 목적 사항
5. 보고 안건
6. 제 23기(2019사업년도) 영업보고
7. 제 23기(2019사업년도) 감사보고
8. 제 23기(2019사업년도)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
9. 부의 안건
10. 제 1호 의안 : 2019사업년도(2019.1.1~2019.12.31)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11. 제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별첨 참조)
12. 제 3호 의안 : 2020사업년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13. 제 4호 의안 : 2020사업년도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14. 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1.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03월 09일

㈜감마누 공동대표이사 김상기, 위청드어 (직인생략)

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장 허인

<별첨> **정관 신구 대조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조문** | **변경 전** | **변경 후** | **비고** |
| 제 3 조 | ①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내에 둔다. | **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**. | (변경) |
| 제 9 조  제2항 | 2.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경우 | **2.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또는 상법 542조의 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**  **10.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** | (변경)  (신설) |
| 제 23 조 |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. | **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.** | (변경) |
| 제 44 조  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|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 | **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거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.**  **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** | (변경) |